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

[서울강남우체국 공고 제2017-33호]

서울강남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 : 2018. 01. 16.(화)
2. 국고귀속대상 : 143건, 282.310원
   o 국고귀속 범위 :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
   (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예납금)
3. 환급기간 : 2017. 12. 15(금) ~ 2018. 01. 15.(월)
4. 환급장소 : 서울강남우체국 영업과
5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   가.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 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
   나. 통신판매 회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   다. 실명확인증표 (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 / 개인 : 신분증)
   라. 회원 본인 및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     1)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     2) 인감증명서 1부
      ※ 구비서류는 서울강남우체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우체국 취미우표 담당(02-2040-4016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2017. 12. 15.

서 울 강 남 우 체 국 장